2024년도 제2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

- 1. 일 자 2024년 1월 25일(목)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창 용 의 장(총재)

조 윤 제 위 원

서 영 경 위 원

신 성 환 위 원

장 용 성 위 원

유 상 대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음
- 5. 참 여 자
 강 승 준 감사
 민 좌 홍 부총재보

 이 상 형 부총재보
 이 종 렬 부총재보

 김 중 부총재보
 채 병 득 부총재보

 이 재 원 경제연구원장
 최 창 호 조사국장

 김 인 구 금융안정국장
 홍 경 식 통화정책국장

 박 종 우 금융시장국장
 오 금 화 국제국장

권 민 수 외자운용원장 민 준 규 법규제도실장

최 용 훈 금융통화위원회실장 허 현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4호 - 「공개시장운용규정」개정(안)>

-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28조 제6호와 제68조에 따라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 선정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 부서는 12월 20일 및 1월 17일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먼저 모든 위원들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취지에 공감하였음. 다만 대 상기관 확대 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우선 일부 위원은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나 자료제출요구권 등이 없는 상황에서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공개시장운영은 성격상 채권매매이기 때문에 위험관리가 대상증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상기관 확대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증거금률을 차등화하고 대상기관 선정 및 재심사 시 재무건전성 평가를 반영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위험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일부 위원은 자산운용사와의 비정례 단기물 RP매각 실시 기준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미 연준 O/N RRP와 같이 당행이 자산운용사와 직접 거래할 경우 시장거래가 축소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콜금리가 기준금리에서 과도하게 벗어난 상황이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비정례적으로 자산운용사와의 RP거래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 하면서, 상시적으로 RP거래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서는 시장거래 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자산운용사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당행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재매도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자산운용사의 경우 MMF로 제한할 계획인데, MMF의 경우 RP매도 제한이 엄격하고 자체 보유채권 규모도 커서 당행 RP매각 채권을 재매도할 가능성은 적다고 답변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지급준비금 예치기관 이외의 기관을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경우 유동성 조절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비은행에 공급된 유동성은 결국 은행으로 환류되기 때문에 유동성 조절 어려움이 추가로 커지는 것은 아니며, 단기금리가 기준금리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등에서는 자산운용사 편입 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동성 조절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답변하였음.

한편 일부 위원은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을 확대할 경우 위기 시 당행의 유

동성 지원을 기대하고 고유동성 자산을 줄이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현재 공개시장운영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주금 공 MBS 등 고유동성 자산만을 대상증권으로 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나 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답변하면서, 현재 회사채 등 크레딧물을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일부 기관의 경우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신청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채 등 대상증권 보유규모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첨언하였음.

이어서 일부 위원은 기관간 RP시장에서 동일한 담보로 RP거래를 할 경우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간 조달 비용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현재 기관간 RP시장은 담보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담보별로는 금리차가 있으나, 동일 담보간에는 차주별 증거금률 차이외에 거래금리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답변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은 한국은행이 RP매입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리스크가 높은 특정 업권에서 높은 금리를 제시하여 대부분의 자금을 받아가는 등 역선택 우려 는 없는지 물었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당행의 일상적 유동성 조절 목적 이외의 RP매입은 비 정례적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RP거래가 자금시장에서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고유동성 채권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언급 하신 상황이 발생할 우려는 적다고 설명하였음.

아울러 일부 위원은 당행과 자산운용사와의 RP거래가 늘어나는 경우 통안증권 발행비용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질의하였음.

이에 대해 관련부서는 현재 통안증권 발행이 유동성 조절 필요규모의 90% 수준을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10% 수준 정도만 RP 및 통안계정을 통해 조절하고 있는 데다 당행의 RP매각은 기준금리 모집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측면에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공개시장운용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붙임>「공개시장운용규정」개정(안)(생략)